

의안번호	2215530
의 퇴 인	김기표의원
회 답 일	2026.3.11.
추계번호	25D7155

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0조(기금의 설치)	법무부장관은 사회통합정책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민자 기여 사회통합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함)을 설치하고 다음과 같은 재원으로 조성함 - 정부의 출연금과 보조금 - 「출입국관리법」 제87조에 따른 출입국수수료 - 「출입국관리법」 제39조에 따른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수수료 - 「국적법」에 따른 허가신청, 신고 및 증명서 등의 발급과 관련된 수수료 - 정부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금, 물품 등 - 기금운용수익금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	의무규정
2	안 제22조(이민자 기여 사회통합기금 운용심의회)	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이민자 기여 사회통합기금 운용심의회(이하 “기금운용심의회”라 함)을 두고,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비고(추계 미실시 사유)
1	안 제20조(기금의 설치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22조(이민자 기여 사회통합기금 운용심의회)	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사회통합정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고,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기금운용심의회를 두도록 규정하는 내용임(안 제20조 및 제22조)
 - 안 제20조제2항에 따라 기금은 다음과 같은 재원으로 구성됨
 - 정부의 출연금과 보조금
 - 「출입국관리법」 제87조에 따른 출입국수수료
 - 「출입국관리법」 제39조에 따른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수수료
 - 「국적법」에 따른 허가신청, 신고 및 증명서 등의 발급과 관련된 수수료
 - 정부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금, 물품 등
 - 기금운용수익금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
 - 또한, 안 제22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함
- 개정안에 따른 기금 조성 및 기금운용심의회 설치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, 사업의 규모, 기금운용심의회 구성 및 연간 회의 개최 횟수 등을 추정할 수 있는 구체적 정보가 필요함
- 그러나 현시점에서는 기금의 조성 및 기금운용심의회 설치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예측할 수 있는 정보가 없어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
 - 안 제22조제3항은 기금운용심의회 구성 및 운영,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
- 참고로 개정안에 따른 기금과 사업 목적이 유사한 법무부 「외국인사회통합지원」(1233-301) 세부사업의 2026년 기준 예산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음

[표 1] 2026년 예산 기준 법무부 「외국인사회통합지원」 사업 편성 내역

(단위: 백만원)

세부사업	내역사업	내내역사업	예산편성액
외국인사회통합지원 (1233-301)	공무직근로자 운영	공무직근로자 보수, 고용부담금, 맞춤형복지비	1,629
	외국인 사회통합업무 지원	난민업무 지원	3,781
		국적, 기타 사회통합업무 지원	9,029
		동포체류지원센터 운영	2,020
	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	민간경상보조	3,561
합계			20,020

자료: 법무부

[표 2] 2026년 예산 기준 “국적, 기타 사회통합업무” 지원 내내역사업의 구성

(단위: 백만원)

내내역사업	구성	예산편성액
국적, 기타 사회통합업무 지원	국적통지서 우편 발송요금 등 공공요금	62
	국민선서 및 국적수여식 행사경비 등	420
	귀화면접관 운영	596
	외국인종합안내센터 운영	4,792
	세계인의 날 행사	200
	동감프로그램 운영	67
	이민자네트워크 운영	96
	자원봉사자 운영	346
	각종 자료인쇄 및 발간	505
	유관기관 간담회 및 회의	51
	사회통합 행사 및 프로그램 용역	655
	기타 사회통합정책 연구용역	908
	사회통합정책 실태 점검	67
	영주 및 귀화자 맞춤형 프로그램	200
	국적심의위원회 운영	14
	외국인 사회통합, 국적, 난민보호 등 우수직원 등 포상금	50
합계		9,029

자료: 법무부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임지원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임지원	02-6788-4664	img!@assembly.go.kr